최저임금 결정에 '준칙주의' 방식 도입



작성: 김창배 수석연구위원 (kim.chang.bae@ydi.or.kr)

1. 여전히 단편적 차원에 머무르는 '최저임금' 논쟁

-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최저시급 등 비현실적 제도 철폐'논란
- 중소기업들의 애로 호소에 대한 화답 차원에서 "비현실적인 제도 등은 철폐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 (11.30, 충북 소재 2차전지 업체 방문 간담회)
-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비현실적'보다는 '철폐'에 방점을 두고 윤 후보 공격
-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한 최저임금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경제구조에 대한 기본적이해가 부족한 것"이라 맹비난 (12.6, MBC 〈뉴스외전〉 출연)
- 이에 윤 후보 측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감당할 정도로 점진적으로 올리자"는 취지 였다고 해명
- □ 여전히 단편적 개선방향을 놓고 격돌하는 여야 후보
- 윤 후보는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이제 시작이 되어야…"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을 제시 (8.22, 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만남)
- 이 후보는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거나 내리면 전환해야 할 기업들이 결국 좀비 기업 형태로 살아남게 된다"며 최저임금 하향조정에 부정적 입장
- □ 주도적 최저임금 논쟁을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 접근법이 필요
- 현실적으로 '차등적용', '인상속도 조절' 등은 노동계의 반발 등 소모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만 키우고 결국 저임금근로자를 외면한다는 프레임에 직면할 가능성

2. 현행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문제점

□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 촉발하면서 사회적 수용성 저하

-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적 기준에 대한 논의보다는 노·사간의 세력 대결 양상
- 세력이 불리한 일방이 심의 과정에서 퇴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위원 전원이 최저임금안 표결에 참여한 사례는 2017년, 2019년 두 차례에 불과
- 올해에도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이 퇴장
- 퇴장 속에 이루어지는 반쪽 표결 등으로 최저임금의 사회적 수용성 저하

□ 표결방식과 무관하게 '기승전(起承轉) 공익위원'안 최종 결론

- 첫째, 노사 양측안을 표결에 부치는 경우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에 의해 결판 (2018년, 2020년)
- 둘째, 어느 한쪽의 퇴장으로 노사 간 힘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는 공익위원들이 낸 별도의 안이 채택 (2015년, 2016년, 2019년, 2021년, 2022년)
- 마지막으로 노사 양측에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제시하고 중재를 통해 적정 최저 임금 의결을 유도하는 역할도 공익위원 (2017년)

〈표 1〉역대 최저임금 결정과정

적용년도	최초인상률 제시		최종 의결	파겨 차어
	근로자측	사용자측	인상률(채택안)	표결 참여
2015	28.5%	0.0%	7.1%(공익)	사용자측 퇴장
2016	79.2%	0.0%	8.1%(공익)	근로자측 퇴장
2017	65.8%	0.0%	7.3%(사용자)	근로자측 퇴장
2018	54.6%	2.4%	16.4%(근로자)	전원 참여
2019	43.3%	0.0%	10.9%(공익)	사용자측 퇴장
2020	19.8%	-4.2%	2.9%(사용자)	전원 참여
2021	16.4%	-2.1%	1.5%(공익)	근로자측 퇴장
2022	23.9%	0.0%	5.0%(공익)	근로자 일부, 사용자 전원 퇴장

^{*}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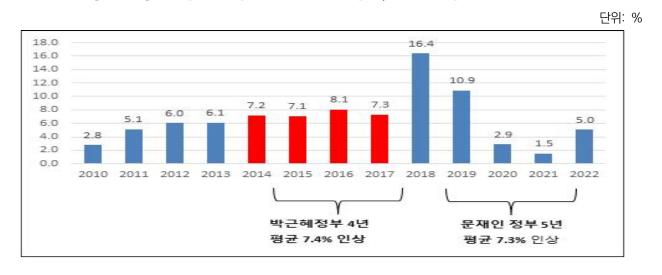
□ 영역별 대표성 문제와 공익위원의 독립성·중립성 논란

- 노동계 위원 9명은 한국노총 5명, 민주노총 4명으로 구성
- 전체 근로자의 12%에 불과한 양대 노총에 가입한 근로자만 대표한다는 비판 제기
- 반면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상당수의 취약 근로자들 대표는 배제되는 문제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는 점에서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구조
-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보수진영, 문재인 정부에서는 진보진영 중심으로 공익위원이 구성되었다는 비판에 제기됨

□ 정권 요구에 춤추는 최저임금 인상률

-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와 전체기간 인상률은 거의 유사
- 박 정부 4년(2014~2017) 평균 7.4% vs. 문 정부 5년(2018~2022) 총 7.3%
- 하지만 문 정권 집권 첫 두 해에 공약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30% 가까이 인상한 것이 일자리 참사는 물론이고 오히려 최저임금 미만율¹⁾을 높이는 부작용 초래

[그림 1] 문 정부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박근혜 정부 때와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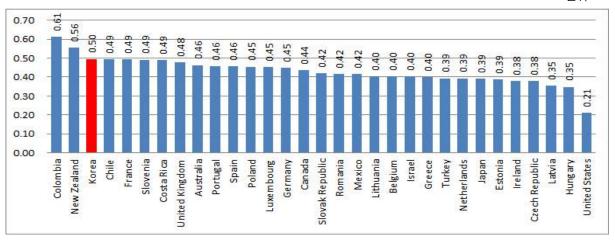
¹⁾ 최저임금 미만율 ;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비율

□ 문 대통령과 노동계가 과거 주장하던 최저임금인상 목표 사실상 달성

- 2020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0.50
- 2012년 18대 대선 당시 文대통령 공약이었던 0.50에 도달
- OECD 31개국 중 3위 수준으로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
- 2020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도 0.62로 OECD국가들 중 7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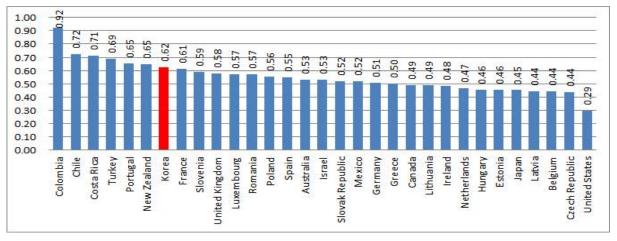
[그림 2] OECD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2020년)

단위: %



[그림 3] OECD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2020년)

단위: %



3. 시사점: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준칙주의' 도입

- 최저임금을 중위임금 대비 60%에 연계되도록 법제화(최저임금법 개정)
- 중위임금 대비 60% 초과시 고용 및 노동시간에 부정적이란 분석 다수
 -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커질수록 득보다 실이 커질 수 있는데 프랑스가 2005년 최저임금이 중위값의 60%에 도달한 이후 추가 인상을 멈춘 이유
 - 2015년 영국'국민생활임금'(NLW)'을 도입하면서 NLW가 중간 소득의 60%를 상회하는 시점부터 고용유지 및 근무 시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 평균 50%보다는 중위 60%가 더 적절
 - 중위값이 데이터의 분산 차이를 더 잘 설명
 - 중위값이 국제 비교시 더 나은 기반 제공
 - 저임금고용 기준선도 통상적으로 중위임금의 3분의 2를 사용
-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을 매년 자동 고시하되 최저임금이 고용과 임금 등 노동 시장에 미친 영향을 모니터링하여 국회에 보고
- 준칙주의 결정방식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려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매년 되풀이되는 소모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됨
- 지금처럼 최저임금 1만원, 지역·연령별 차등화 등은 노사간 첨예한 대립이라는 벽에 부딪혀 공허한 말싸움과 정쟁에 그칠 것이 자명
- 이번 대선에서는 최저임금 결정방식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후보간 치열한 정책논쟁을 벌이기를 기대함